

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 [ 2008. 4. 8 ]  
규정 제 1 호

개정 2015. 12. 24  
" 2016. 3. 10  
" 2016. 8. 16  
" 2018. 12. 11  
" 2019. 9. 27  
" 2019. 10. 2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관의 정의)** ①대관이라 함은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단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②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(개정2019. 10. 29)

**제3조(대관종류)**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,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, 접수하여 승인한다. 단,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, 승인할 수 있다. (개정2019. 10. 29)
2.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.

②대관은 목적에 따라 준비대관, 연습대관, 공연대관, 철수대관, 녹음대관,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,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.
2. 연습대관은 공연 전 및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.
3.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.
4. 철수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.
5. 녹음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.
6. 기타대관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, 영화, CF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.

**제4조(대관범위)** 법인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, 설비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기본시설 (개정2019. 10. 29)
2.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부대시설 및 설비(개정2019. 10. 29)
3. 기타 부대설비 :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, 기타부속설비

**제5조(대관심의위원회)** ①대표이사는 재단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②수시대관의 경우 재단 자체 내의 위임전결사항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③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.

**제6조(대관신청)** ①재단내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(개정2019. 10. 29)

②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연 1회로 대표이사가 정한 일정한 시기를 기본으로 하고 재단의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.(개정2019. 10. 29)

③제2항의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④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(대관승인)** ①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, 대관승인 거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②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2019. 10. 29)

③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.

**제8조(사용시간)** ①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

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사용료 등)** ①재단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“별표”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.(부가가치세 별도)(개정 2018. 12. 11)(개정2019. 10. 29)

②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,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.(개정2019. 10. 29)

③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.

④대표이사는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,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및 전시, 지역 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 등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.(개정2019. 10. 29)

⑤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공연의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대관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(개정2019. 10. 29)

**제10조(입장권의 발행)** 대관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(개정2019. 10. 29)

**제11조(사용료 특례)** ①대표이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(개정2019. 10. 29)

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8. 16)

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
2.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(개정 2019. 10. 29)

3.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(개정 2016. 8. 16)

4.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의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시작일 10일전에 취소한 경우 :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

**제12조(대관신청제한, 사용취소·제한 및 신청자격 정지)** ①재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.(개정2019. 10. 29)

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

1. 법령 공연법 [법률 제8345호(문화예술진흥법)] 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2.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법인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목적의 행사 (개정2019. 10. 29)
  3.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
  4.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
  5.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
  6.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
  7.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(단, 의정부아트캠프는 아마추어 공연 단체 및 개인도 대관가능)
  8. 유아, 초·중·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(단, 개인이라 할 지라도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내·외적으로 공인된 작품 및 행사는 신청가능.)
  9. 동일인(단체, 기관)의 정기·수시대관의 신청이 각 3건 이상일 경우
  10.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(개정 2019. 10. 29)
-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대표이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(개정 2019. 10. 29)
1.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  2.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
  3.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4. 재단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(개정 2019. 10. 29)
  5.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  6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7. 재단의 대관규정 또는 공연장 대관내규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(개정 2019. 10. 29)
- ③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(개정 2019. 10. 29)

1.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(개정 2019. 10. 29)
2.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
3.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(개정 2019. 10. 29)
4.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
5.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
6.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7.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(개정 2019. 10. 29)

**제13조(변경금지)** ①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②모든 공연 내용(공연명, 연주자, 공연내용, 주최자 등)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9. 10. 29)

③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한다. (개정 2019. 10. 29)

④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.(개정 2019. 10. 29)

⑤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한다.
2.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.

**제14조(사용자의 의무)**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,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(개정 2019. 10. 29)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** ①사용자가 공연,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

한다.

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(개정 2019. 10. 29)

③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(개정 2019. 10. 29)

④사용자가 재단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(개정 2019. 10. 29)

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내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.(개정 2019. 10. 29)

⑥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(개정 2019. 10. 29)

**제16조(입장제한)**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19. 10. 29)
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 자 및 무단 출입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(개정 2019. 10. 29)
5.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(개정 2019. 10. 29)

**제17조(배상책임)** ①재단은 사용자의 제12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(개정 2019. 10. 29)

②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 10. 29)

③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의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

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.(개정 2019. 10. 29)

**제18조(적용규정)**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(개정 2019. 10. 29)

**제19조(시행내규)**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15. 12. 25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부 칙(2016. 3. 10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부 칙(2016. 8. 16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부 칙(2018. 12. 11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부 칙(2019. 9. 11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부 칙 (2019. 10. 29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



□ 전시장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면적	기본 대관료	비고
원형	453㎡ (137평)	135	○ 1일 대관료는 09:00~22:00까지 13시간 기준 - 22:00 이후 초과시 1일 대관료의 200% 적용 ○ 냉·난방비 별도 계약 징수 - 냉방비 : 1시간당 20,000원 - 난방비 : 1시간당 10,000원 - 필요시 기본임무 1일 사용시간 3시간(예열시간포함) - 냉방 7월~8월, 난방 12월~2월은 사용자 의무 신청 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1전시실	144㎡ (43.5평)	45	
제2전시실	144㎡ (43.5평)	45	

□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<신설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기본 대관료	비고
시설명			
야외 무대 및 야외 광장	오전	200	○ 사용시간:오전(09:00~12:00),오후(13:00~17:00),야간(18:00~22:00) ○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각 1회로 함. ○ 철수대관 - 야간 2시간(17:00-19:00)이내 철수 시 기본대관료의 50% - 22:00 이후 철야는 3시간당 야간기본 대관료 150% 추가 적용 ○ 금요일 오후와 야간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%를 가산함. ○ 야외무대 무대기술인력 지원 없음 ○ 야외무대 댄스플로어 작업 시 인건비 및 기자재 대관자 부담 ○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행사 및 공연 종료 후.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대관자 부담 ※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야외행사 시에만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대관가능
	오후	300	
	야간	300	

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

□ 의정부아트캠프 <신설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기본 대관료	비 고
캠프 블랙	1435m <sup>2</sup> (43평)	오전 100 오후 200 야간 200	○ 사용시간 : 오전(09:00~12:00), 오후(13:00~17:00), 야간(18:00~22:00) ○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각 1회로 함. ○ 금요일 오후와 야간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%를 가산함. (※캠프 블랙만 적용)
캠프 민트	26.8m <sup>2</sup> (8평)	오전 15 오후 15 야간 20	○ 공연준비, 연습, 철수대관 - 오전, 오후,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% - 22:00 이후 철야는 3시간당 야간 기본 대관료의 150% (※캠프 블랙만 적용)
캠프 오렌지	26.8m <sup>2</sup> (8평)	오전 15 오후 15 야간 20	○ 모든 냉·난방비는 기본대관료에 포함함 ※ 의정부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는 캠프블랙 기본대관료의 30% 감액 ※ 의정부아트캠프의 냉·난방비는 기본시설사용료에 포함